[양형위원회 제122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

Ⅰ. 양형위원회 제122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3. 2. 13. 15:00
- 장소 :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심의 및 양형기준안 의결
  ②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양형기준안 의결
  ③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의결

Ⅱ.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
- 양형연구회 정기 총회
- 2022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개최 결과 보고
- 일본 사법부 방문 결과 보고
- 2023년도 상반기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
-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보고
- 2022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제작 및 오픈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이벤트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보고

Ⅲ.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52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Ⅳ.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및 수정안 심의 결과

[1] 설정 및 수정안 중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된 사안에 대한 심의

1. 형종 선택의 기준 제시 방식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함

- 양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경/기본/가중의 3단계 권고 영역을 활용하여 ① '벌금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 ② '벌금형 또는 자유형의 선택을 권고하는 영역', ③

'자유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을 제시하고, 여기에 적절한 서술식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

2. 벌금형 권고 구간의 설정 및 권고 형량범위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함

가. 대유형 1(교통사고)의 중유형 가(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금고형 권고 형량범위는 수정하지 않기로 하고,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는 교통사고 치상은 감경영역 100만원 - 700만원, 기본영역 500만 원 - 1,200만원, 교통사고 치사는 감경영역 500만 원 - 1,500만 원으로 각각 중첩 설정

나. 대유형 1(교통사고)의 중유형 나(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는 수정하지 않기로 하고,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는 위험운전 치상의 감경영역에만 7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중첩 설정

다. 대유형 1(교통사고)의 중유형 다(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는 어린이 치상은 감경영역 6월 - 1년6월, 기본영역 10월 - 2년6월, 가중영역 2년 - 5년으로 하고, 어린이 치사는 감경영역 1년6월 - 3년, 기본영역 2년 - 5년, 가중영역 4년 - 8년으로 각 설정하기로 하고,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는 어린이 치상의 감경영역에만 3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중첩 설정

라. 대유형 2(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을 10월 - 2년6월, 가중영역을 2년 - 6년으로, 치사 후 도주의 기본영역을 3년 - 6년, 가중영역을 5년 - 10년으로, 치사 후 유기도주의 기본영역을 4년 - 7년, 가중영역을 6년 - 12년으로 각각 상향하고 또한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는 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에만 3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중첩 설정

마. 대유형 3(음주·무면허운전)의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를 아래의 표와 같이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3	음주운전(혈중알	6월 – 10월	8월 – 1년4월	1년 – 1년10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300만 원 – 600만 원	500만 원 – 800만 원	700만 원 – 1,000만 원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500만 원	2년6월 – 4년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 – 4년

3. 형종 선택에 관한 서술식 기준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다음과 같이 정함

가.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 중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금고형을 권고하는 서술식 기준을 두기로 함

나. 음주·무면허운전 제1, 2, 3유형의 각 가중영역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징역형을 권고하는 서술식 기준을 두기로 함

4.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기준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다음과 같이 정함

가. 교통사고(대유형 1)의 중유형 가(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의 특별가중인자에서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삭제하고, 교통사고(대유형 1)의 중유형 가(일반 교통사고), 나(위험운전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2)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로 양형인자 및 정의규정을 수정하기로 함

나. 교통사고(대유형 1)의 각 중유형과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에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에 따라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일반가중인자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를, 일반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규정하기로 함

다. 일반가중인자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라. 각 유형의 전과 관련 일반가중인자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로 통일하기로 하고,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기로 함

마.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에서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를 각각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의규정을 두기로 하고, 특별가중인자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동종 누범'을 규정하기로 함

○ 단, 전문위원단 작성 초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일반감경인자 중 행위인자로 규정한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함

[2] 설정 및 수정안 중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심의

1. 형종 선택에 관한 서술식 기준

가.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대유형1 중유형 가의 소유형1),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대유형1 중유형 가의 소유형2), 위험운전 치상의 기본영역(대유형1 중유형 나의 소유형1), 어린이 치상의 기본영역(대유형1 중유형 다의 소유형1),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대유형2의 소유형1)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벌금형 선택 사유에 포함할지 여부

① 제1안은 벌금형 선택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하는 안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양형인자에 불과한데,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확정된 권고 형량 범위를 무력화하여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형종 선택의 사유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추가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가 특별양형인자화 되어 버릴 우려가 있음

② 제2안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벌금형 선택 사유에 포함하는 안

- 양형실무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처벌 전력도 형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교통사고 범죄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인데 가중영역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가혹함

③ 심의 내용

- 제1안과 같이 정하기로 함

나.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벌금형 선택 사유로 포함할지 여부

① 제1안은 처벌불원에 더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도 벌금형 선택 사유로 포함하는 안

▪ 제8기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 원칙’에 따라 규정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교통사고 치사 유형에서만 제외시킬 경우 일관성이 떨어지고 실무상 혼선 우려됨.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거부하여 처벌불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유리한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② 제2안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제외하고 처벌불원만 벌금형 선택 사유로 규정하는 안

③ 심의 내용

▪ 제1안과 같이 정하기로 함

다.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대유형1 중유형 가의 소유형1),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대유형1 중유형 가의 소유형2), 위험운전 치상의 기본영역(대유형1 중유형 나의 소유형1), 어린이 치상의 기본영역(대유형1 중유형 다의 소유형1),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대유형2의 소유형1)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이 결합된 범행인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① 제1안은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 결합 범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안

▪ 음주운전 또는 마약투약이 결합된 경우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다보면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번에 음주·무면허운전을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였고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존재하므로, 음주운전이나 마약범죄가 결합된 범죄의 경우 다수범죄 가중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음

② 제2안은 서술식 기준에 ‘(다만 음주운전·마약투약이 결합된 경우는 제외)’라는 괄호 규정을 두어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이 결합된 범행인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안

▪ 각각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제외사유로 추가. 음주운전 또는 마약투약이 결합된 경우를 형종 선택에서만 제외하자는 것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과는 별개임

③ 심의 내용

▪ 제1안과 같이 정하기로 함

라.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중 권고형으로 벌금형이 있는 영역에서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거나, 징역형을 권고하는 기준을 두기로 하였는데, 위 동종 전과 기간의 범위

① 제1안은 10년 이내로 규정하는 안

■ 2023. 1. 3.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2진 아웃의 처벌 가중요건으로 고려하는 전과의 시적 범위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범죄구성요건'으로 적용되는 전과의 범위보다 '양형'에 참작되는 전과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그 반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고려하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의 시적범위는 최소 '10년'으로 정함이 타당. 5년 이내 3회 동종 전과가 나오는 사례는 형사사건 처리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 것으로 보임

② 제2안은 5년 이내로 규정하는 안

■ 형종을 제한하는 사유로 동종 전과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10년보다는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동종 전과의 정의규정에 따른 범위를 볼 때 5년 이내 3회의 동종 전과 사례가 아주 드물다고 보기 어려움. 10년 이내 전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정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③ 심의 내용

■ 제2안으로 정하기로 함

마.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4, 5유형의 각 가중영역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① 제1안은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라는 서술식 규정을 두는 안

■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양형사례에 비추어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할 필요

② 제2안은 위 서술식 규정을 두지 않는 안

■ 음주운전 관련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의 가중영역에서조차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감경·기본·가중영역을 나누고, 특별가중·감경인자를 종합하여 형량범위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양형편차에 줄이려는 양형기준의 존재 의의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음.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각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범위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범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이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형량범위를 잠탈하는 규정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③ 심의 내용

■ 제1안과 같이 정하기로 함

2.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기준

가. 교통사고(대유형 1)의 각 중유형과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에서 특별가중인자로 '피해자가 5명 이상인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를 추가할지 여부

① 제1안은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규정하지 않는 안

■ 교통사고 범죄에서 하나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해차량에 피해자가 몇 명이 있는지는 우연적인 요소인데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피해자별 피해정도 역시 천차만별일 수 있음

② 제2안은 특별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하는 안

③ 심의 내용

■ 제1안과 같이 정하기로 함

나. 교통사고(대유형 1)의 각 중유형과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에서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유지할지 여부

① 제1안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유지하는 안

■ 가해자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양형인자 겸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규정하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일반양형인자 겸 일반참작사유로 규정하였음. 일반감경인자 겸 일반참작사유로서 예시적인 규정이므로 포함시켜도 무방함

② 제2안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각 삭제하는 안

③ 심의 내용

■ 제1안과 같이 정하기로 함

다. 교통사고(대유형 1) 및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의 집행유예기준에서 주요 참작사유로 처벌불원 외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추가할지 여부

① 제1안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 추가하는 안

■ 제8기 양형위원회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규정

② 제2안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제외하는 안

③ 심의 내용

■ 제1안과 같이 정하기로 함

라. 대유형 3 음주·무면허운전에서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라는 양형인자 겸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위상

① 제1안은 이를 일반가중인자 겸 일반참작사유로 규정하는 안

■ 다른 범죄군의 경우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모두 일반가중인자 겸 일반참작사유로 규정

② 제2안은 특별가중인자 겸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하는 안

③ 심의 내용

■ 제1안과 같이 정하기로 함

V.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결과

[1]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안 중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된 사안에 대한 심의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다음과 같이 정함

1. '농아자'라는 용어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작량감경'을 '정상참작감경'으로 각 수정하고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절도, 방화, 성매매, 권리행사방해 양형기준에 심신미약에 관한 서술식 기준을 두기로 함
2.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정의규정이 없는 범죄군에 각 정의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와 없는 범죄를 나누어 규정하기로 함
3. 정의규정의 배치를 정비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를 반영하여 전과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 '피고인이 고령'을 삭제하며, 오탈자를 수정하기로 함

[2]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안 중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심의

1. 강도범죄 양형기준에 심신미약 서술식 기준을 추가할지 여부

가. 제1안은 강도범죄에도 심신미약 서술식 기준을 추가하자는 안

■ 만취상태에서 범죄 가능성이 있어 심신미약 감경 여부가 문제되는 범죄이므로 포함

나. 제2안은 추가하지 않는 안

다. 심의 내용

■ 제1안과 같이 정하기로 함

2.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의규정 관련하여, 아래 범죄를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분류할지,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분류할지 여부

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의 경우

① 제1안은 피해자 있는 범죄로 분류하는 안

■ 채권추심법위반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분류되어야 함

② 제2안은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분류하는 안

③ 심의 내용

■ 대부업법위반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채권추심법위반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분류하기로 함

나. 무고범죄의 경우

① 제1안은 피해자 있는 범죄로 분류하는 안

■ 무고범죄는 일반양형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두고 있음

② 제2안은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분류하는 안

③ 심의 내용

■ 제1안과 같이 정하기로 함

VI. 향후 일정

1. 제18차 공청회

▣ 일시 : 2023. 3. 27.(월) 오후

▣ 안건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2.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 일시 : 2023. 4. 24.(월) 오후

▣ 안건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각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과 등 심의, 각 양형기준 최종 의결